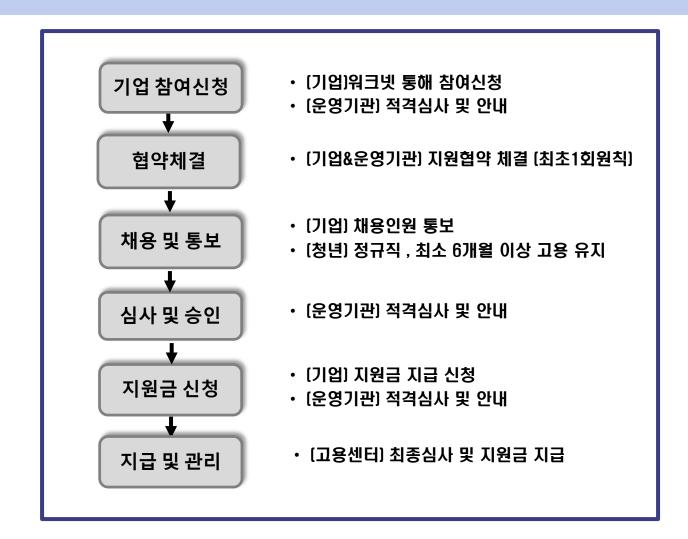
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참여 신청 안내





신청절차





안내 및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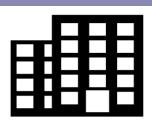
- 1. '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, 예산이 소진된경우에는 사업이 연도 중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[지침 p.3-4. 사업운영]
- 2. 예산 소진으로 타 운영기관으로 이관해야하는 경우, 승인 이후 이관 가능
- 3. 고용센터 최종심사 시, 운영기관의 착오 · 오류 등으로 기업의 적격 및 지원한도 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된 경우 정정될 수 있음
- 4 지원받는 기간동안 인위적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함 (기업 내 모든 근로자에 해당)
- 5. 기업의 고용보험 체납 또는 사업장 내 임금체불 이력이 없어야 함
- 6. 근로계약 시 최저 임금 준수 필수 (2022년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 1,914,440원/시급 9,160원)
- 7. 참여자는 만 15세~34세 이하로 정규직 신규 채용자만 가능 (지침p.12-1.지원대상 청년)

 * 단,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나 3개월 이내 정규 전환한자는 참여 가능
- 8. 참여자 중도퇴사 시, '사직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'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
- 9. 운영기관에서 신청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. 피보험자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
- 10. 지원금 부정수급 시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수령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 할 수 있음
- 11. 이외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침에 의거 운영 된다.





참여기업 지원요건



[원칙] 직전 1년 평균 피보험자수 5인이상 기업 (대전,금산,공주,논산,계룡)

- ▶ 소재지가 대전지역인 기업 (대전,금산,공주,논산,계룡)
- ▶ 피보험자수 5인미만도 참여 가능 (별첨참고)
- ·성장유망업종

- · 미래유망기업
- ·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
- · 지역주력산업
- ·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
- ·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

- (=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)
- ·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
- · 청년창업기업
- ·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
- 0. 청년창업기업이란?

창업자가 만 15세~39세 이하인자이며, 개시한 날부터 현재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(법인/법인등기부등본, 개인/사업자등록증 제출)

- ▶ 기업 소재지가 그 외 타지역인 경우
- ▶ 참여 불가 기업
- · 소비 · 향락업 등 업종 ·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· 국가 및 공공기관 · 국가나 지차제의 보조금 받는 기관
- ▶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(ex. 일용근로자, 파견직)
- ▶ 임금체불 사업주
- ▶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
- ▶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에 있는 사업장
- ▶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(cf. 고용위기지역 사업장 제외)
- ▶ 근로자의 이직 당시, 사업주가 같은경우 (ex. 인수·합병·분할)



참여청년 지원요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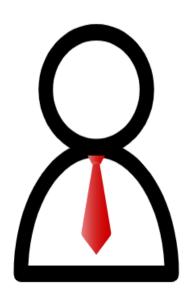
- ▶ 만 15세 ~ 만 34세 이하 (군필자의 경우, 만 39세 이하)
- ▶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 ~ 직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(cf. 자영업자 및 특고 · 예술인은 제외)
- ▶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가능한 자
 - · 학점수료 이수한 졸업예정자 가능(단, 재학생 및 휴학생 불가)
 - · 고졸이하 학력 청년[서식6-2 제출]
 - · 최종학교 졸업일 ~채용일까지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인 자
 - · 고용촉진장검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
 - ·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
 - ·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
 - ·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 - · 보호종료아동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[보호종료확인서 제출]
 - ·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
- ▶ 채용일 당시, 타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- ▶ 현 사업장에서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계약직 or 프리랜서로 재직한자
- ▶ 사업자등록을 한 자 (cf. 임대사업자는 가능)
- ▶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(cf. 3년 초과 계약하는경우 제외)
- ▶ 최저임금 미만인 자
- ▶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
- ▶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▶ 외국인 (cf. 고용보험 적용대상, 영주, 결혼이민자는 가능)
- ▶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(cf. 도약장려금 지원액 미만은 가능)
- ▶ 고등 · 대학교 재학중 or 휴학중인자 (cf. 졸업예정자는 가능)
- ▶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 (ex.소비향락업종)





참여청년 채용요건



- ▶ 2022. 1. 1. ~ 2022. 12. 31. 채용자
- ▶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함 (6개월 미만도 조건 해당 시, 가능)
- ▶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(정규직)
- ▶ 채용이후,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- ▶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/ 직무제한 없음
- ▶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
- ▶ 일경험프로그램 or 계약직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경우 참여가능 단, 전환하기 이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해야 함.
- ▶ 정규직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정하여도 대상으로 인정



기업신청 서류

[신청방법] 신청서류를 3개 파일을 워크넷 (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) 사이트에 파일 첨부

참여기업

- ① [서식4]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- ② 사업자등록증
- ③ 4대보험가입자명부





문의처



(사)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일자리지원팀

정경숙 팀장 T. 042-368-9715 어진정 주임 T. 042-368-9732

이나라 사원 T. 042-368-9705 이승언 사원 T. 042-368-9716

세종소재지기업은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로신청(☎044-905-1614)



